

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

제정 1985. 1. 23 조례 제 334호
개정 1988. 10. 20 규칙 제 486호
개정 2001. 7. 24 규칙 제1103호
일부개정 2020. 3. 20 규칙 제1556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0. 3. 20]

제2조(장학금의 신청) 「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0. 3. 20>

1. 삭제 <2001. 7. 24>
2.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(학교장용)
3. 삭제 <2020. 3. 20>
4.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

제3조(추천) 동장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신청서류에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(동장용)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송부한다.

[전문개정 2020. 3. 20]

제4조(선발) ① 시장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동장은 선발된 대상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3. 20>

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3. 20>

③ 제2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20>

제5조(지급 결과 통지)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결과를 동장,

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

통장, 학교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0. 3. 20]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88. 10. 20 규칙 제48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. 7. 24 규칙 제110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3. 20 규칙 제155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0. 3. 20>

통장자녀장학금 신청서

통 장 (보호자) 인 적 사 항	성 명			
	소 속	동 통장		
	생년월일		연락처	
	주 소			
	통장경력	년 월부터 년 월까지 (년 월)		
재직기간 중 장학금 수혜 여부		있음() 없음()		
자 녀 (학생) 인 적 사 항	성 명	(남 · 여)	통장과의 관계	
	생년월일		연락처	
	학 교 명	학교 학년		
소 득 수 준 (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)		지역가입자	직장가입자	혼합가입자
		원	원	원 (직장: 원) (지역: 원)
<p>「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라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작성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(보호자) 성명 (서명 또는 인)</p> <p>○○ 동장 귀하</p>				
첨부서류	<p>1. 학교장의 추천서 1부</p> <p>2.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</p>			

[별지 제3호서식] 삭제 <2020. 3. 20>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0. 3. 20>

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(동장용)

통 장 인적사항	성 명	
	소 속	동 통장
	생년월일	
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	성 명	(남 · 여)
	학 교 명	학교 학년
	생년월일	
추천의견		
<p>「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통장 자녀 장 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안양시 ○○동장 성명 (직인)</p> <p>안양시장 귀하</p>		

